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8호 2012. 10. 22 (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12- 918 호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2- 47 호 검두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8
- 하동군 고시 제2012- 48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6차) 10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2- 912호 유해야생물 포획 허가 공고 12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2- 908호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 하동군 공고 제2012- 910호 하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회 람									
----------------	--	--	--	--	--	--	--	--	--

하동군 조례 제2012-918호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2009.12.01) 폐지(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제5항)
- 나. 협의회 기능 보완(안 제4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자문사항 등
- 다. 협의회 운영위원수 조정(안 제5조제1항)
 - 20인 ⇒ 15명
- 라. 협의회 운영위원수 조정 및 자구수정(안 제6조)
 - 20인 ⇒ 15명
 - 각 호의 인 ⇒ 명
- 마. 사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바. 재정에 관한 사항중 ①항의 “진료수입”에 관한 문구 삭제 및 ③항 ④항 삭제(안 제8조)
- 사.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 나. 입법예고 : 2012. 10월중(20일이상)
- 다. 조치사항 : 별도조치 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2012-918호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하 동 군 공 보

(4) 제 348 호

4. 감사 1명

-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운영협회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수입은 하 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관)(생략) 1~4.(생략) <u>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6~8.(생략)</p>	<p>제3조(정관)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u>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u> 6~8.(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u>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한다.</u></p>	<p>제4조(기능)① <u>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u> 1. <u>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u> 2. <u>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u> 3. <u>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u> ② <u>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 1. <u>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u> 2. <u>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u> 3. <u>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u></p>
<p>제5조(기구) ① <u>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u> ② ~ ④(생략)</p>	<p>제5조(기구) ① ----- <u>15명 이내</u>----- ----- ② ~ ④(현행과 같음)</p>
<p>제6조(임원) (생략) 1. <u>회장 1인</u> 2. <u>부회장 1인</u> 3. <u>운영위원 20인이내</u> 4. <u>감사 1인</u> ② <u>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u></p>	<p>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 1. --- 명 2. --- 명 3. --- <u>15명 이내</u> 4. --- 1인 ② ----- ----- <u>선출</u> -----</p>

하 동 군 공 보

(6) 제 348 호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p> <p>⑤ (신 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④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감사는 협의회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p>
<p>제7조(사무장)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p> <p>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p> <p>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7조(수당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제8조(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까지 협의회 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④ 협의회는 감사는 세입, 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재정) ① 협의회는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p><삭 제></p>
<p>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2-47호

검두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08.

하 동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 하동군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검두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5번지일대(검두마을)
 - 나. 면적 : 78,657m²(178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가. 일필지 조사
 - 일필지 조사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한 일필지조사서 작성
 - 일필지 조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1) 토지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3)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일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적재조사 측량

<p>기초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설치 - 위성측량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의 방법으로 실시
<p>세부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 - 경계점표지 설치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 지적확정조서 작성.

하 동 군 공 보

(10) 제 348 호

하동군 고시 제2012 - 4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6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2.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2길 39-27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11) 제 348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486-1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112-38	20070618	주민들의 건의로 황금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67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내길 62-14	20070618	송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88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33	20070618	동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7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73-21	2008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 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53-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27-35	20080402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75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57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 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27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57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 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2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길 225	20090302	뒷산의 생김새가 디딜 방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93-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황시골길 160-28	20090302	황시골이라는 골짜기 지명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12) 제 348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2 - 912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2. 10. .

하 동 군 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 획 기 간 : '12. 10. 19 ~ '12. 12. 19일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산29일원	이병인	총렵 (자력)	'12. 10. 19 ~ '12. 12. 19일	허가기간 내 까치 10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 공고 제2012-908호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
2. 제안 이유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1)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1) 일반농어가 : 총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까지, 면적과 철거 범위를 감안 2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 가능
 - 2) 총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 초과 시 자체부담

하 동 군 공 보

(14) 제 348 호

마. 지원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1)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이어야 함
- 2)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바. 사업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하동군수(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055-880-2132, FAX 880-2109, e-mail nass6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안)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에 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348 호

제4조(지원제외) 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개량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2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부담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7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 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7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348 호

하동군 공고 제 2012-910호

하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포상조례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포상조례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표창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외부위원의 경우 심의시 업무 애로가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 「하동군포상조례」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 「하동군 포상조례」 및 「하동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 나.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5조)
 - 표창 심의시 인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 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5조의2)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등
 - 라. 사무주관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2조)
 - 자치행정과 → 행정과, 행정지원과 → 행정과
 - 마.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5조)
 - 정기포상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 → 종무식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4, FAX 880-2159, 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0.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개정이유

표창 심의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외부위원의 경우 심의시 업무 애로가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 「하동군포상조례」 및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 「하동군 포상조례」 및 「하동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나.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5조)

- 표창 심의시 인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5조의2)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방법으로 필요시 서면의결 가능

하 동 군 공 보

(20) 제 348 호

라. 사무주관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2조)

- 자치행정과 → 행정과, 행정지원과 → 행정과

마.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5조)

- 정기포상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 → 종무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경상남도 포상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감사실
- 다른 시군 입법선례
 - 「거제시 포상조례」, 「함안군 포상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포상조례를 하동군 포상조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348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u>실과장</u>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인사위원회</u>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p> <p><u>제9조의2 <신 설></u></p>	<p>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u>실과소장</u>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공적심사위원회</u>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p> <p><u>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p> <p>① <u>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u></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을 하동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주관) ①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 을 제외한 유공자는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348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얻어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 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주관) ①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는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p>